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와 지역사회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와 지역사회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2월 13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각급 학교와 지역사회의 교류 활성화를 통하여 학생·학부모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학교시설 이용 효율화의 증대, 평생교육시설의 확충, 교육환경의 개선 뿐 아니라,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교육·문화·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함(안 제2조)

나.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 학교 부족한 시설의 지역사회 시설 공동 이용, 학교부지에 학교복합시설 건립 등의 지원시책을 강구하고 추진하여야 하는 교육감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다. 교육감은 각급 학교 학교시설 및 물품을 지역사회가 이용하게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결연사업을 추진하거나 학교복합시설 건립 및 운영·관리에 관한 협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라. 교육감은 각급 학교와 지역사회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학교시설 이용 효율의 증대, 교육환경의 개선 등에 기여한 기관 및 개인에게 포상 및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2월 28일(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참조 : 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62, 팩스 032-440-8784, 이메일 : bks3245@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 출 자	해당사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 고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붙임자료

-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와 지역사회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와 지역사회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학교와 지역사회의 교류 활성화를 통하여 학생·학부모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학교시설 이용 효율의 증대, 평생 교육시설의 확충, 교육환경의 개선 뿐 아니라,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주민에 다양한 교육·문화·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란 지리적, 행정적 분할에 의해 나누어진 인천광역시의 일정한 지역 안에 성립되어 있는 생활공동체를 말한다.
2. "학교"란 인천광역시에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학교복합시설"이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3조의2에 따라 학교부지를 활용하여 문화 및 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평생교육시설 등을 함께 건립하는 복합화사업으로서 학생과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가능한 도서관·생활체육시설·보육시설 등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소속 각급 학교에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지역사회가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대한 지원시책을 강구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의 부족한 시설은 지역사회 시설을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학교부지에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복합시설을 학교시설과 함께 건립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시설 및 물품의 이용 등) ① 교육감은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각급 학교 학교시설 및 물품을 지역사회가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각급 학교의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③ 교육감은 학교와 지역사회의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결연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학교복합화시설 건립 및 운영·관리에 관한 협약을 맺을 수 있다.

제5조(포상 등) 교육감은 각급 학교와 지역사회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학교시설 이용 효율의 증대, 교육환경의 개선 등에 기여한 기관 및 개인에게 포상 및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업무협조) 교육감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외부기관
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제11조(학교시설 등의 이용) ▣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체육시설의 설치 등)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3조의2(복합시설) ▣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세부내용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관련자료	“해당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학교를 둔다.

1. 삭제
2. 초등학교·공민학교
3. 중학교·고등공민학교
4.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5. 특수학교
6. 각종학교

제11조(학교시설 등의 이용) 모든 국민은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학교의 장의 결정에 따라 국립학교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고, 공립·사립 학교의 시설 등은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체육시설의 설치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확보와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직장의 장은 종업원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학교의 체육시설은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에게 개방·이용되어야 한다.

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체육시설 설치를 권장하고 건전하게 운영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3조의2(복합시설) 교육부장관 또는 특별시·광역시·도교육감(이하 "시·도교육감"이라 한다)은 국·공립학교에 교육상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문화 및 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평생교육시설 등의 복합시설을 둘 수 있다.

□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각 호의 공·사립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시설개방 및 주민의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방원칙) ① 각급학교의 장은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 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행사·시설공사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학교시설을 개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하고,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학교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

제3조(개방방법) ① 각급학교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 학교시설을 개방하기전에 학생·교직원 또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교직원 등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충분한 사전조치를 한 후 개방하여야 한다.

② 2개 학교 이상 공동이용을 목적으로 건축한 체육관 등의 시설을 개방하거나 개방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관리하는 학교장은 공동이용학교장과 협의하여 그 개방 및 제한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이용의 제한 등) ①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의 관리 및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학교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일몰 후에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2. 다수인이 행사나 경기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학교시설 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4. 기타 불건전한 목적으로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② 각급학교의 장은 이미 허가를 받았거나 이용중이라 할지라도 설립목적수행에 따른 교육활동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변경·취소하거나 그 이용을 거부할 수 있다.

1. 이용수칙을 위반한 때
2.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
3. 학습분위기를 저해한 때

제5조(이용수칙 및 홍보) ① 각급학교의 장은 학교시설의 개방시간·이용방법 등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과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한 이용수칙을 작성하고, 이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이용수칙에는 제2조 및 제4조에 따른 이용제한 사유와 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학교시설 개방 관련 홍보를 학생·교직원, 학부모 등에게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학교시설 개방 관련 민원 해소에 적극 노력하며, 이와 관련하여 민원전용 상담창구를 홈페이지에 설치 운영할 수 있다.

1. 개방시설의 종류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
2. 사용에 따른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학교시설 이용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

제6조(사용료 및 비용 징수 등) ① 학교시설 사용료 및 시설 사용료 이외의 실제 소요경비 징수 기준·시기, 사용료 감면·반환 등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이용자가 학교 시설물이나 물품을 훼손·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자의 의무 및 책임) ①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선량한 이용자로써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8조(지도 및 감독)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며 학교시설이 지역주민에게 최대한 이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급학교의 장이 정한다.

부칙 <제463호, 2008.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 발생 요인

조례안은 학교와 지역사회의 교류 활성화 추진 등으로 기여한 기관 및 개인에게 포상 및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포상 및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하나 비용의 정확한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건설교통위원회 이 재 병 의원